

특정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문경시 대형건설공사장 기동감찰 -

2019. 5.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천원, 명)

일련 번호	소 관	건 명	처 분 요 구		
			처분종류	재 정 상 조치금액	신 분 상 조치인원
1	○○○○과	△△△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회수 19,379	훈계1
2	○○○○과	▽▽▽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감액 192,070	-
3	○○○○과	☆☆☆☆☆ 조성공사 공기연장 부적정	주의	-	훈계1
4	○○○○과 ○○○○○○○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 추진 부적정	주의	-	훈계2
5	○○○○과	≫≫≫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	훈계1
6	○○○○과	♀♀ ♀♀♀♀ 복원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	훈계2

2.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연번	제 목	관 련 자			문 책	비 고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1	△△△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과			훈계	
2	▽▽▽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 부적정	○○○○과			-	
3	☆☆☆☆☆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	○○○○과			훈계	
4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 추진 부적정	○○○○과			훈계	
		○○○○○○			훈계	
5	≫≫≫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과			훈계	
6	㉸㉸ ㉸㉸㉸ 복원사업 추진 부적정	○○○○과			훈계	
					훈계	

3. 처분요구일람표

1) △△△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4
2) ▽▽▽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7
3) ☆☆☆☆☆ 조성공사 공기연장 부적정	(주의)	10
4)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 추진 부적정	(주의)	13
5) ≫≫≫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16
6) ☞☞ ☞☞☞☞ 복원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19

일련번호	1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명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19,379천원
수감부서(처리부서)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문경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문경시 ○○○○○과에서는 “△△△ 소하천 정비사업”을 2015. 5. 22. (주)△△△ (대표 \$ \$ \$)과 계약하여 2019. 10. 30일 준공예정으로 [표1]과 같이 추진중에 있다.

[표1] 공사 현황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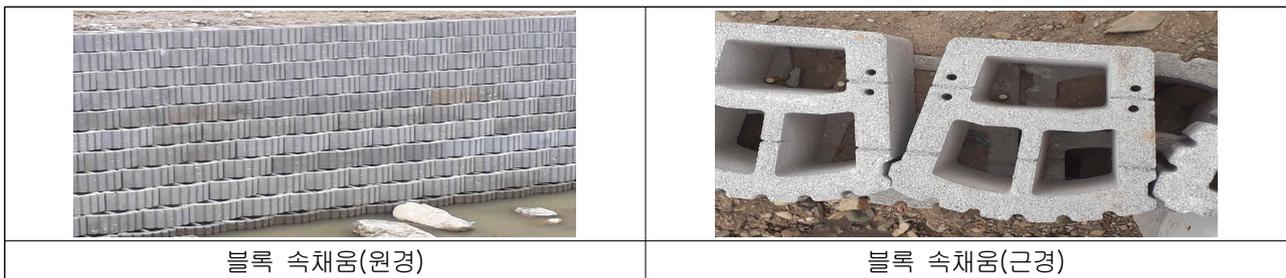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부 고시 제2018-385호)」 제4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해당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식생옹벽블록은 석재 및 자연재의 구입이 어려운 지역에 자연경관창출, 친수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용하는 공법이다.

또한, 「같은 지침」 제103조 및 제16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7호)」 제13장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등 서면으로 공사감독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자 및 공사감독자는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부족시공 및 부실시공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문경시 ○○○○과에서는 ‘△△△ 소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자연경관창출 및 친수환경 조성을 위해 설계 반영된 식생옹벽블록 시공과정에서 반드시 시공하여야 하는 채움재(흙)를 [사진1]과 같이 시공하지 않고 있으며, [사진2]와 같이 공사 완료 구간 내 비탈면 보호공(씨드+거적) 및 일부구간 천단이 미시공 상태로 있음에도 공사감독자는 감사일 현재까지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사진1] 블록 속채움 미시공 전경



[사진2] 비탈면 보호공 및 천단 미시공 전경



또한, 비탈면보호공(씨드+거적덮기) 및 일부구간의 천단(콘크리트 타설)이 미시공 상태에서 2016~2018년 동안 준공처리(1차 2016년 5월, 2차 2016년 12월, 3차 2017년 12월, 4차 2018년 12월)됨으로 인하여 사업비 19,379천원(제경비 포

함)이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 ① 부당 집행된 사업비 19,379천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회수하시고, 식생옹벽블록 채움재에 대하여는 보완시공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자는 「경상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명	재정상 조치방법	감액	재정상 조치금액	192,200천원
수감부서(처리부서)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문경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문경시 ○○○○과에서는 “▽▽▽ 하천재해예방사업”을 2018. 8. 23. (주)◁◁ 건설(대표 \$ \$ \$)과 계약하여 2021. 2. 13일 준공예정으로 [표1]과 같이 추진중에 있다.

[표1] 공사 현황 “생략”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고,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는 철근량을 절감하고 효율적 단면으로 설계하도록 철근강도를 SD300에서 SD400¹⁾으로 상향하여 설계하도록 각종 표준도를 개정하

1) SD300, SD400 : SD(Steel Deformed bar)는 이형철근을 의미하며 뒤의 숫자는 철근의 항복강도를 의미함. SD300은 철근의 항복강도가 3,000kgf/cm²인 이형철근을 의미하며 SD400은 철근의 항복강도가 4,000kgf/cm²인 이형철근을 의미

였다.

따라서, 문경시 ○○○○과에서는 ‘▽▽▽ 하천재해예방사업’을 시행하면서 ‘▽▽▽(▽▽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보고서(이하 실시설계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하천재해예방에 노력하여야 했다. 그러나, 실시설계보고서 제5절 ‘[표2] 보 물받이 길이 결정’을 살펴보면 블라이 공식²⁾으로 결정된 보 물받이 길이보다 과다하게 반영(1.38~3.46배)되어 있어 바닥보호공의 길이를 적정하게 조정하도록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감사기간 중 건설사업관리자[(주)△△엔지니어링]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관리관(●●●)이 현장 확인한 결과 Å 교, Ç Ç 보, 우우보의 경우 바닥보호공 길이를 현장상황에 적정하게 조정하면 사업비 189,200천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2] 보 물받이길이 결정 “생략”

또한, 본 공사에 적용된 옹벽 설계를 개정 표준도를 이용하여 재검토한 결과 사업비 2,870천원(철근량 4ton, 제경비 포함)이 절감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현장여건,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보 물받이 길이’를 재결정하여 사업비 절감방안(189,200천원 정도)을 마련하시고, 옹벽표준도 개정에 따른 과다 계상된 사업비 2,870천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

2) 고정보에서 하류측 물받이 길이를 구하는 공식

일련번호	3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부서)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조성공사 공기연장 부적정
소 관 청 문경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문경시 ○○○○○과에서는 “☆☆☆☆☆ 조성공사”를 2017. 10. 31. 문경시<<<<과 계약하여 2019. 12. 20일 준공예정으로 [표1]과 같이 추진중에 있다.

[표1] 공사 현황 “생략”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재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안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0.05%)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태풍·홍수, 그밖에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밖에 계약대상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할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의 구입곤란 등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에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청구된 때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문경시 ○○○○과에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 등 계약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 기간 중 우천’을 사유로 계약기간을 30일 연장하였고, ‘폭염’을 사유로 계약기간 25일 연장하여 총 55일간의 계약기간을 부적정하게 연장하였다. 그러나, ‘폭염’으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여름철 폭염대비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철저, 경상북도 산림자원과-12706)은 가능하나 안전관리비 정산내역(2018년 7~8월)에 장비유도요원 인건비³⁾가 지출된 것으로 확인된 바 폭염 중지기간 중 사업을 정상 추진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표2] 공사기간 연장현황 “생략”

이는 계약상대자가 공사기간 종료 시점에 임박하여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3) 7월 27~31일(5일간, 1명) 60만원, 8월 1~20일(15일간, 2명) 196만원

상황에 이르게 되자 부당한 사유를 들어 55일간의 계약기간을 연장함으로서 문경시<<<< 대표 \$\$\$에게 관계규정에서 정한 지연배상금 26,295천원 (956,213천원×55일×0.05%)을 납부하지 않도록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 ① 건설공사 공기연장 등 전반적 사항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자는 「경상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부서)	○○○○과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문경시**
관 계 부 서 **○○○○과, ○○○○○○**
내 용

문경시 ○○○과, ○○○○○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 ♀♀
♀♀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 등 4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1] 공사현황 “생략”

1.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승인절차 미이행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90조에 따르면 총공사비 5억원 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이상 건축공사, 총공사비 2억원 이상 전문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득한 후 착공 전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문경시 ○○○과, ○○○○○에서는 아래 [표2]와 같이 ‘♀♀
♀♀♀♀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 등 4건 공사의 경우 품질시험계획서만 제출했
을 뿐 그 내용이 관련 규정에 미비함에도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의 검토·확인 및 승인한 사실이 없다.

2. 건설공사 시험실(장비) 미설치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3조에 따르면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때 건설업자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를 고용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시행규칙 별표5>

공사분류	공사규모	시험장비	시험실 면적	품질기술자 배치기준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1000억원 이상, 연면적 5만㎡ 이상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검사장비	50㎡ 이상	특급1명, 중급2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500~1000억원, 연면적 3만~5만㎡ 이상		“	고급1명, 중급2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100~500억원, 연면적5천~3만㎡ 이상		20㎡ 이상	중급1명, 초급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2~100억원		“	초급1명 이상

그런데도, 문경시 ○○○○과, ○○○○○○에서 추진 중인 ‘♀♀ ♀♀ ♀♀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등 4건의 공사는 품질기술자는 배치하였으나 시험실(장비) 미설치 등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는 장·단기적으로 건설공사의 안전확보, 목적물의 성능보장과 내구성 확보 및 사용자의 안전 확보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에 따라 관련법으로 건설공사 품질관리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문경시 ○○○○과, ○○○○○○에서는 품질관리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 ①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자는 「경상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5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부서)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문경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문경시 ○○○○과에서는 “>>> 조성사업(문경 :::::공원)”을 아래 [표] 와 같이 2018. 10. 24. ‘문경시<<<< \$ \$ \$’과 계약 하고 2019. 4. 27.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공사현황 “생략”

1. 설계변경 없이 우선 시공 방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하며,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2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부터 실정보고, 설계변경 방침결정 등의 보고 및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단순한 경우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문경시 ○○○○과에서는 시공자가 ‘도자기미로’ 진입부에 위치한 ‘트릭아트’와 ‘그늘막’을 도면과 상이하게 시공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시공자로부터 실정보고, 설계변경 방침결정 등의 보고 및 승인요청이 없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현장을 방치하고 있다.

2. 계약기간 연장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르면 태풍·홍수, 그밖에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밖에 계약대상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할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의 구입곤란 등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에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청구된 때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문경시 ○○○○과에서는 2019. 3. 11.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 등 계약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 기간 중 강수 및 기

온 강하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을 사유로 계약기간을 14일 연장하였고, 2019. 3. 29. '트릭아트(포토존) 및 조형물 디자인 시안 지연'을 사유로 계약기간을 21일 연장하여 총 35일간의 계약기간을 부적정하게 연장하였다.

이는 계약상대자가 공사기간 종료 시점에 임박하여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게 되자 부당한 사유를 들어 35일간의 계약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문경시◁◁◁◁ 대표 \$ \$ \$ 에게 관계규정에서 정한 지연배상금 12,919천원 (738,236천원 × 35일 × 0.05%)을 납부하지 않도록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 ① 건설공사 공기연장 등 전반적 사항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자는 「경상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6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부서)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 복원사업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 부적정
소 관 청 문경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문경시 ○○○○○과에서는 “♣♣ ♣♣♣♣ 복원사업”과 “℞℞ ℞℞℞℞ 예방사업”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 ♣♣♣♣ 복원사업 외 1건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이하 “우우 외 1건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한다.)을 다음 [표]와 같이 추진하고 있다.

[표] 사업현황 “생략”

위 관서에서는 위 사업 ‘공사기간 연장(공사중지 등에 따른 연장)에 따른 용역기간 변경(증 206일)’의 사유로 당초 용역비 1,182,900천원에서 1,411,000천원으로 228,100천원을 증액하는 “우우 외 1건 건설사업관리용역(총괄1회)” 설계변경을 2018. 12. 12. 시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절 3.에 따르면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414호)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해당 공사내용 및 공사진척상황, 연도별 공사비 집행규모 등 현장실정에 따라 기술자 배치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계획의 기술자수를 조정·배치하여야하고, 이 경우 상주기술자는 최소 1명을 배치하여야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발주청은 해당 공사의 규모 및 공종 등을 고려하여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를 배치하여야하며, 동절기 및 공사중지기간 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이를 조정·배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 ☞☞☞☞ 복원사업”이 보상협의 지연 및 우기철 시공 곤란 등의 사유로 공사추진이 불가(공사중지 2015.1.13.~2015.9.13.)했으면 “우우 외 1건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통합건설사업관리를 수행중인 “㉠㉠ ㉠㉠㉠ 예방사업”의 공사규모 및 공종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⁴⁾를 제외하고 철수하는 것으로 조정·배치함이 타당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동절기 공사중지기간⁵⁾ 동안에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1명을 제외하고 철수하는 것으로 조정·배치하였어야 했으나 별도의 조정·배치를 검토하지 않았다.

4) “㉠㉠ ㉠㉠㉠ 예방사업”은 상주기술자 총3명 중 고급(토목)1, 중급(토목)1 2명이 담당하였음.

5) ☞☞ ☞☞☞☞ 조성사업 : 2017.12.22.~ 2018.2.26., 2018.12.24.~ 2019.1.21.

㉠㉠ ㉠㉠㉠ 예방사업 : 2018.12.24.~ 2018.12.31.

그 결과 공사추진 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배치(97.50인·월→94.22인·월) 하였을 경우 제외되어야 할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45,000천원(제경비 포함)이 낭비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 ① 건설사업관리용역 전반적 사항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자는 「경상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